

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

의안 번호	204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2022. 12. 2.
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감면기준에 의거 전국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등을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

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
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나. 세목별 감면내역

- 사업소분 주민세
 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를 면제한다.
-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, 이하 같다)
 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다. 기 타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(지방의회 의결 감면)
- 나.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제5항(지방세 감면규모 등)
- 다. 「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」(지방세특례제도과-2488, 2022.11.2.)
- 라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제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
- 마. 「지방세법」 제80조~제84조(사업소분 주민세), 제104조~제123조(재산세)

참고 1 관련법령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: 지방의회 의결 감면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
-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

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
-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- 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제나목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□ **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**

제2조(재난의 범위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
2.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

□ **행정안전부 유권해석(지방세특례제도과-531(2020.3.9.))**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“자연재난”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“사회재난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, 사회재난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,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

□ **행정안전부 지침(지방세특례제도과-2488(2022.11.2.))**

□ **감면 내용**

- (지방자치단체) '22. 2기분 자동차세부터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'22년 11월 중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完, '23년까지 감면 조치
- '22. 12. 자동차세 ~ '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

세 목	부과대상	납기	소관 지자체
① 주민세 (개인분)*	· 사망자 가족 (개인, 개인사업자) * 지방세법 §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	8월	광역시, 군·군
	·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	6월, 12월	광역시, 군
	·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·주택 등	7월, 9월	군·군
② 지역자원 (소방분)	· 사망자 가족 (소방분)		광역시
③ 취득세	·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	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	광역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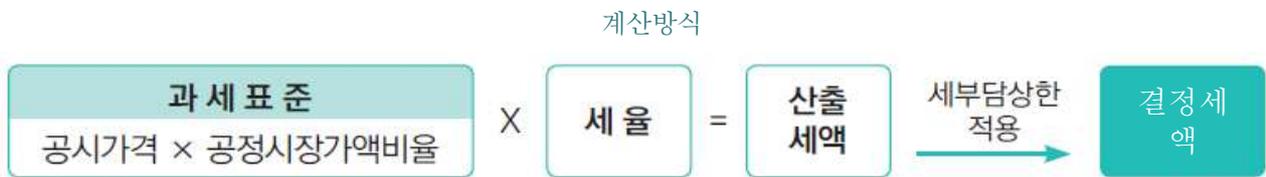
참고 2 감면대상 세목별 개요

1 주민세(사업소분) <지방세법 제80조~제84조>

- ※ 주민세는 사업소분(구·군세), 개인분(시세), 종업원분(구·군세)으로 구분됨
- (납세의무자)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
- (과세표준 및 세율) 기본세율(5만원)
- (과세기준일 및 납기) 매년 7월 1일 기준, 매년 8.1. ~ 8.31. 납부

2 재산세 <지방세법 제104조~제123>

- (과세대상) 토지, 건축물, 주택, 기타(항공기, 선박)
- (납세의무자) 과세기준일(6.1일)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
- (과표 및 세율)



- 과세표준 :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
 - 공정시장가액 비율 : 주택 60%, 토지·건축물 70%
- 세율
 - (주택) 0.1%~0.4% / (건축물)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%,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0.5%, 기타 0.25%
 - (토지) 종합합산 0.2%~0.5%, 별도합산 0.2%~0.4%, 분리과세(전·답·과수원 등 0.07%, 골프장·고급오락장 4%, 그 밖의 토지 0.2%)
- 세부담 상한 :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

* 주택 (3억원 이하) 105%, (3억 초과~6억원) 110%, (6억원 초과~) 130% / 토지·건물 : 150%

○ (납기)

과세대상	납기
토지	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
건축물	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
주택	$\frac{1}{2}$ 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, 나머지 $\frac{1}{2}$ 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※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음

○ (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)

- 재산세 도시지역분(舊 도시계획세) : 주택, 토지, 건축물(0.14%)
 - 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
-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: 주택, 건축물(0.04%~0.12%)
- 지방교육세 : 재산세 세액의 20%